

보도자료



보도 일시	2022. 3. 25.(금) 조간	배포 일시	2022. 3. 24.(목)	
담당 부서	금융정보분석원	책임자	실 장 김동환(02-2100-1720)	
<총괄>	기획행정실	담당자	사무관 정연수(02-2100-1787)	

3.25일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이 시행됩니다.

- 가상자산사업자간 100만원 상당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송·수신인 정보의 제공, 보관 의무가 본격 시행됩니다. -

1 개 요

- □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가상자산을 **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**하는 경우
 - 가상자산의 이전과 함께 **송·수신인 관련 정보**를 **의무적으로 제공**하도록 하는 제도(**트래블룰**)가 '22.3.25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.*
 - * 트래블룰은 '21.3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령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그간 업계의 정보제공시스템(트래블룰 솔루션) 구축작업을 거쳐 '22.3.25일부터 본격 시행
 - 2 트래블룰 시행 주요 내용
- □ (적용대상)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백만원 상당*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.
 - * 고객이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청한 때,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 기준

- □ (제공정보·시기)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과 받는 고객의 성명, 가상자산 주소를 가상자산 이전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,
 -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이전받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**요청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**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고객의 **주민등록 번호등**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.
- □ (정보 보관) 가상자산사업자는 트래블룰 의무이행에 따라 수집된 송·수 신인의 정보를 거래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- □ (검사·감독) 가상자산사업자가 트래블룰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, 검사·감독 결과에 따라 **사업자에 대한 기관주의**, 기관경고, 시정명령 등의 조치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

※【참고사항】

- ◇ 특정금융정보법상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적용
 - 현재 가상자산사업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**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시** 사전 등록제 등은 자금세탁 방지 등을 위해 **업계 자율적으로 추진**하는 사항
- ◇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경우 국내와 달리 트래블룰이 의무화되어 있지않고 실질적으로 이행 준비가 안된 상황이므로
-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, 트래블룰이 구축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의 가상자산 이전은, 자금세탁 위험 경감을 위해 **송·수신인이 동일한 것으로 확인**되고 **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**되는 경우에 한해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방안 시행

3 향후 계획

- □ 금융정보분석원은 향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검사 시 금번 시행되는 트래블룰의 이행 및 정착 과정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,
 -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,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.

담당 부서	금융정보분석원	책임자	실 장 김동환(02-2100-1720)
<총괄>	기획행정실	담당자	사무관 정연수(02-2100-1787)
담당 부서	금융정보분석원	책임자	과 장 이동욱(02-736-1740)
	가상자산검사과	담당자	사무관 조성조 (02-736-1743)



